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지침

제정 2013.06.05

개정 2016.08.01

KCLAVIS®

㈜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

제 1 편 총칙

제 1 조 (목적)

본 기준 및 절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) 제 58조(수수료), 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5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㈜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(이하 "회사")가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,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여 수수료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법시행령, 법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규정 시행세칙 및 그 외 업무관련 법규(이하"관련법규"라고 한다)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.

제 3 조 (용어의 정의)

-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"투자자문" 이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(종류, 종목,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)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.
- 2. "투자일임"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투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·처분 혹은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 을 말한다.
- 3. "기본수수료"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자문계약자산 또는 투자일임계약자산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계약자산의 운용성과와 관계없이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한다.
- 4. "성과수수료"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종료일에 계약 자산을 평가하여 계약체결시점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성과수수료 부과기준을 충족한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한다.
- 5. "판매수수료"란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집합투자증 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수수료를 말하며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
- 6. "환매수수료"란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기간 이전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시 일정한 범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. 이는 펀드운용의 안정성과 펀 드 환매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
- 7. "보수"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로서 집합투자지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 - 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 : 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

받는 보수

- 나. 판매 보수 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- 다. 신탁업자 보수 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의 대가 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-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또는 집합투자기구 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- 마. 성과 보수 :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 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집합투자업자가 받는 보수

제 4 조 (수수료 체계)

- 1. 투자자는 회사와 투자자문 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수수료 지급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으며,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회사의 수수료 정책을 기본으로 투자자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 - 가. 기본보수와 성과보수를 지급 (이하 '기본형'이라 한다)
 - 나. 성과보수만 지급 (이하 '성과형'이라 한다.)

제 5 조 (수수료 부과절차)

- 1. 수수<mark>료</mark> 수준은 계약의 특성, 규모,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 계약 기준으로 경영진이 결정한다.
- 2.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서 수수료에 대해 정하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야 한다.
- 3. 회사는 집합투자규약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,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.
- 4. 투자일임/자문 수수료의 경우 다음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나, 관련 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, 투자일임/자문 계약서에 수수료계산 방법, 수수료계산기간 및 수수료 지급시기를 상세히 기술한다.

□ ㈜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 수수료율

계약자산		기본형 (기본보수+성과보수)			
		기본	성과		성과형
일임계약	~ 20억	1%	6%초과	15%	17%
	20억 초과 ~ 100억	0.9%	6%초과	14%	15%
	100억 초과	0.8%	6%초과	13%	15%
자문계약		1%	6%초과	15%	15%

제 6 조 (수수료의 부과기준)

- 1. 투자자는 기본수수료는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, 성과수수료는 계약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.
- 2. 성과수수료 부과기준 수익률은 계약종료일 실현 수익률이며, 중간에 계약자산의 증감이 있는 경우, 계약자산의 증감을 반영한 기준가로 성과를 계산한다.

제 7 조 (설명의무)

회사 혹은 투자권유위탁시 투자권유 대행인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법 제 4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공시 및 통보)

- 1. 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http://www.kclavis.com)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- 2. 회사는 법 제 58조 제3항에 따라 이 기준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부칙 (2013.06.05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.06.0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6.08.01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.08.01일부터 시행한다.